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협력 안전관리 가이드북



image: storyset.com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머리말

안전은 누군가의 의무가 아닌,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할 문화입니다.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급인의 책임강화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청(도급인)과 하청(수급인)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각자의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과 제도는 도급업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원청사업주의 책임으로만 강조하고 있어, 하청근로자 사망사고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총은 도급사업장 내 모든 산재예방 주체(도급인, 수급인, 중간수급인)들이 협력하여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도급인과 (중간)수급인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본 가이드북이 원·하청·간의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조성을 위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 목 차 -

| | | |
|----------------------------|---|--------------------------------|
| 1. 도급 관련 주요 용어 설명 | 1 | 도급인과 수급인 / 4 |
| | 2 | 건설공사발주자 / 5 |
| 2.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의무 | 1 | 도급인의 의무 / 7 |
| | 2 | 수급인의 의무 / 9 |
| | 3 | 중간수급인의 의무 / 10 |
| 3.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 | 1 | 안전관리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및 지원 강화 / 12 |
| | 2 |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13 |
| | 3 | 체계적인 위험작업 관리시스템 마련 / 15 |
| | 4 |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체계 운영 / 17 |
| 4.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1 | 도급인 체크리스트 / 19 |
| | 2 | 수급인 체크리스트 / 20 |

1. 도급 관련 주요 용어 설명

- 1 도급인과 수급인 / 4
- 2 건설공사발주자 / 5



1. 도급 관련 주요 용어 설명

1 도급인과 수급인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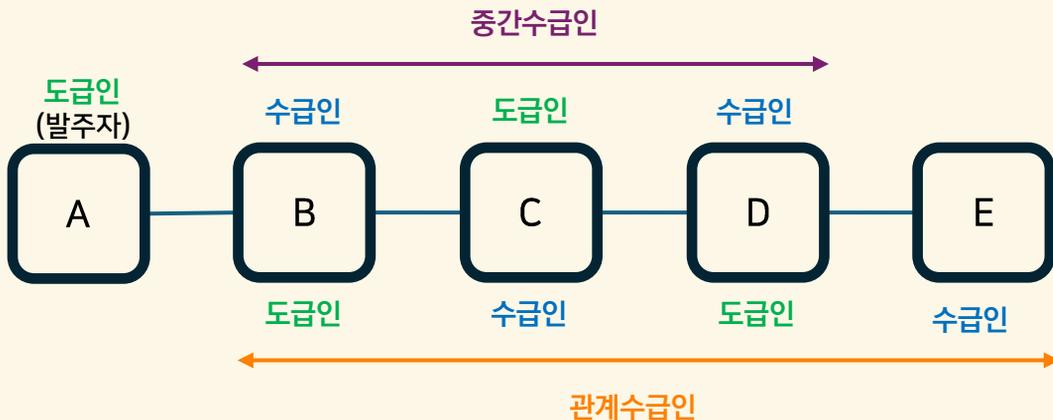
■ **도급인**(원청사업주)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산안법 제2조7호)

- ① 컨베이어 등 생산에 필요한 기계·전기설비 등의 유지보수를 도급 준 경우 **도급인**에 해당
- 본래 사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 ② 자재 납품 및 설치·하자보수 등 단순 구매계약에 따른 업무
 - ③ 설계·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의 사무업무
 - ④ 구내식당, 청소, 경비, 통근버스 등 서비스 용역 업무를 도급 준 경우에도 **도급인**에 해당



■ **수급인**(하청사업주)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관계수급인**은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중층적 도급관계)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산안법 제2조 8·9호)

<중층적 도급관계 예시>



1. 도급 관련 주요 용어 설명

2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안법 제2조10호)

〈참고〉 건설공사의 종류

| 조문 | 내용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시행령 별표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공사: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업 ■ 전문공사: (공사업) 포장, 실내건축, 지붕조립, 도장·방수, 조경식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상·하수도설비, 철도 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증설, 기계설비·가스,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 ■ 전기공사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 ■ 정보통신공사 |
| 소방시설공사업법 | ■ 소방시설공사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국가유산 수리공사 |

● ①건축물 신축·증축공사, 인테리어 공사 ②공장 지붕에 대한 보수공사 ③보일러, 플랜트 등 기계설비를 설치·교체·해체하는 공사는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책임을 지게 됨

● 그 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부 지침을 참고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발주·도급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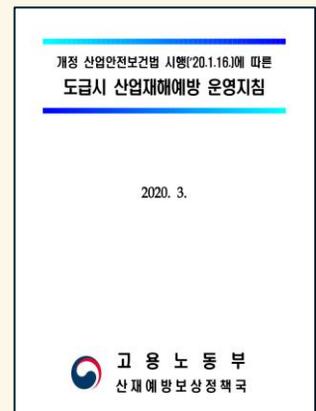
〈참고〉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 판단 기준 (고용부,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여부는

- ①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 ②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 ③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건설공사발주자**로 판단 시 도급인의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준 발주자는 각종 안전보건대장 작성·확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공사금액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1억~120억 미만 공사) 산재예방 지도계약 의무 준수



2.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의무

- 1 도급인의 의무 / 7
- 2 수급인의 의무 / 9
- 3 중간수급인의 의무 / 10



2.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의무

1 도급인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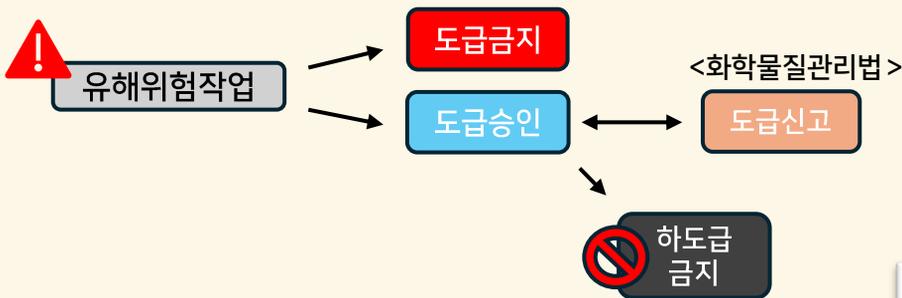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위험한 작업은 도급이 금지되거나, 정부의 승인(신고)을 받아야만 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산안법 제58조~제60조)

- **(도급의 금지)**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 취급작업 등은 도급이 불가
단, ① 일시·간헐적 작업 ②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도급을 줄 수 있음
- **(도급의 승인)** ①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②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도급을 줄 수 있음

<참고> 산안법상 도급승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도급신고

- 산안법상 도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4종(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의 화학물질은 동시에 화관법상 도급신고 대상(유해화학물질)
- 상기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각각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금지)** 도급의 승인을 받은 작업은 하도급을 줄 수 없음



■ 도급을 줄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주어야 합니다. (산안법 제61조)

- 적격 수급인 선정에 필요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발간 매뉴얼을 참조하기 바람



[<매뉴얼 다운 링크>](#)

2.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의무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의무

| 조문 | 내용 |
|------|---|
| 제6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
| 제63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단, 보호구 착용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제외) |
| 제64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순회점검, 합동점검 -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대비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 등 조정 - 위생·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도급인 시설 이용 협조 - 발파작업 / 작업 중 화재·폭발·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대피방법 등 훈련 -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 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확인 |
| 제65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 제6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도급인)의 의무

| 조문 | 내용 |
|---------|---|
| 제4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나 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 제5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나 법인·기관이 제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4조에 해당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 (단,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시행령 제4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건설업 및 조선업)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의 공사·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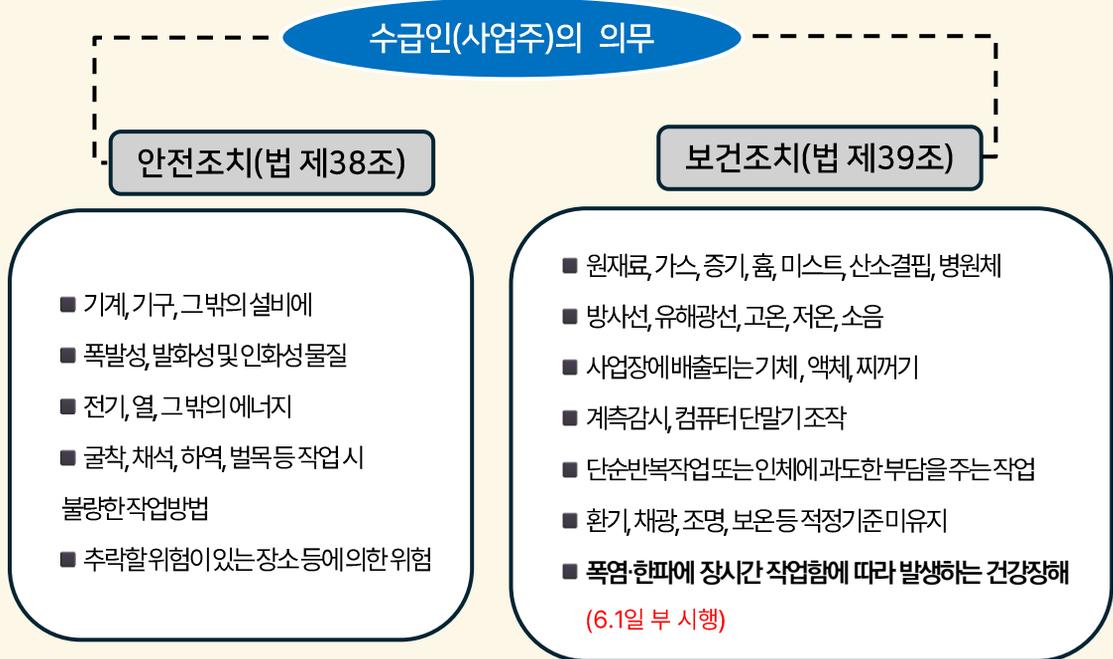
2.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의무

2 수급인의 의무



■ **수급인**은 도급업무를 맡았더라도 소속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산안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 근로자가 위험작업 시 산안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해야함
- 상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원을 받아 의무를 준수할 수 있음



■ **도급인**이 추진하는 비상시 대비훈련, 협의체 회의, 순회·합동점검 등 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2.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의무

3 중간수급인의 의무



■ **중간수급인**은 중층적인 도급계약 구조에서 중간단계에 있는 수급인을 의미합니다.

- **중간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산안법 상 의무를 부담하면서, 도급인과 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함**

✓ <참고> 도급 시 안전조치의무 이행주체 관련 법원 판결 사례

①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수급인 근로자가 거꾸집에 깔려 사망 (대구지법 2021고단3504)

재판부는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개별 작업의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등을 부담하는 주체는 도급인이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작업을 직접 담당한 수급인**’으로 결론, 도급인 사업주에게는 무죄판결

② 하수관 설치공사 중 수급인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 (전주지법 2023고단1699)

재판부는 “흙막이 공사중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보공을 철거하고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등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설명, 현장소장이 잘못된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도급인 사업주에 보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도급인에게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위반혐의가 없다고 판단함

“단지 도급인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위험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판시하며 사고 당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작업을 지휘하는 ‘사업주’인 수급인이 안전조치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함

3.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

- 1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및 지원 강화 / 12
- 2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13
- 3 체계적인 위험작업 관리시스템 마련/ 15
- 4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체계 운영 / 17



3.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

1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및 지원 강화

■ **도급인**이 모든 **수급인**의 안전의무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역량을 갖춘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수급인**에게 업무를 맡길지는 **고용부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평가 및 선정기준을 마련**해 결정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 |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
| 1. 일반원칙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 2.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 ◆ 실행수준 | |
| 4. 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 5.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조구 착용 확인 포함) |
| 6.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건에 대한 이행 포함) |
| 7.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8. 안전작업허가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 ◆ 운영관리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재해발생 수준 | |
| 12.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안전하게수행할역량이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안전하게수행할기본적인역량을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안전하게수행할역량이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안전하게수행할역량이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안전하게수행할역량이매우낮음 |

출처: 고용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ex) 밀폐공간작업등 위험이따르는작업을도급할시에는상위등급(A등급이상)을 받은업체와계약,일반작업에는C등급이상업체와계약하는등 평가지표를반영

■ **수급인**은 **도급인**과 계약한 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맡기는 것(재하청)을 지양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에만 **도급인**의 승인을 받은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맡겨야 함

■ 업무를 맡겼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관리활동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지원, 위생시설 이용 협조 등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수급인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검토해야 함

3.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

2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도급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를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협업체)** 도급인은 (1차)수급인, 중간수급인(도급인)은 (2차)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업체」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아래 사항을 논의해야 함

논의사항 ▣ ① 작업의 시작시간 ②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③ 비상시 대피방법
④ 위험성평가 실시 사항 ⑤ 사업주와 수급인 / 수급인 상호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순회점검)**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점검을 방해해선 안되며,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점검주기 ▣ 도급인은 업종에 따라 ① 2일 1회(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② ①을 제외한 사업은 1주일에 1회 순회점검 실시

- **(안전보건교육)** 관계수급인이 특별교육을 실시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관계수급인의 요청 시 교육 장소 및 자료를 제공·지원해야 함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① 발파작업, ②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발생에 대비한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대피훈련에 관계수급인도 적극 참여해야 함
- **(작업시기 조정)** 관계수급인 간 작업혼재로 화재·폭발 등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확인해야 함



협업체구성운영



작업장순회점검



비상시대피훈련

3.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

- (합동점검)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함

| 합동점검반 구성 | 점검 주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인 ■ 관계수급인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공정에만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월에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분기에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의 사업 |

- (정보의 제공) 도급인은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줄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정보제공을 적극 요청해야 함(산안법 제65조)

<정보제공 대상 유해·위험작업 작업>

- ①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 ② ①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③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그의 근로자가 법을 준수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그 시정지시에 잘 따라야 합니다.(산안법 제66조)
- 수급인에 대한 연간(정기) 평가를 통해 우수한 업체와 재계약(도급금액 상향)을 맺거나 안전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른 관계수급인의 동기부여에 활용해야 합니다.

3.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

3 체계적인 위험작업 관리시스템 마련

■ **도급인** 사업장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는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 작업이 시작되기 전 **도급인**과 **수급인**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 개선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작업허가제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해 개선해야 함

〈참고〉 산안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 중 위험성평가의 주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
|---|---|
| <p>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p>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p> |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세부내용은 <고용부 지침> 참조

- **(특별안전보건교육)** **도급인**은 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급인**은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여야 함
 ※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작업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위험작업 허가)** **도급인**과 **수급인**은 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작업 시 안전보건정보와 위험성평가 결과가 반영된 **표준작업절차서**를 제공하고, 도급인의 승인 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



유해위험기계설비에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위험작업에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진행



위험작업시작전 **작업절차서**의
검토·허가를 거친 후 작업 실시

- 작업 중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감시인 등으로 하여금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상황**(안전조치 및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관찰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업중 **보호구 착용 여부** 점검



작업중 **안전조치 및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 **점검감독**

3.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

4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체계 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도급인의 사업장 내라는 특성으로 인해 수급인의 교육실시 간 어려움이 종종 발생합니다.
 - 산안법 규정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 및 자료제공 등의 지원을 해야 함(법 제64조)
-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내이며, 작업공정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도급인이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안전보건교육은 도급인이 수립한 교육 계획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같이 참여시키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내용·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도급인·수급인 사업주가 참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교육을 받더라도 교육일지 작성, 근로자 서명관리 등은 소속 근로자의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주로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내용 작성, 서명일지 관리 등을 **도급인**이 이행할 경우 불법파견의 징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도급인**의 안전보건교육에 **수급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수준평가 시 교육참여율, 평균점수 등의 반영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급인과수급인근로자가
함께안전보건교육에참여



도급인과수급인이각각
안전보건교육현황을관리

4.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1 도급인 체크리스트 / 19
- 2 수급인 체크리스트 / 20



4.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1 도급인 체크리스트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 조치사항 |
|---|------|-----|------|
| | 예 | 아니오 | |
| 도급한 작업이 도급이 금지되는 작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도급의 승인이 필요한 작업인지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득하였는가? | | | |
| 고용노동부의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가능한 역량을 갖춘 수급인에게 업무를 도급하였는가? |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작업 전 수급인의 작업내용을 파악해 흔재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시기 등을 조정하였는가? | | | |
| 작업 전 수급인과 연락방법, 비상시 대피방법에 관하여 협의하고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 | |
| 작업 전 TBM 등 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가? | | | |
|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진행 간 논의하였거나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위험요인은 즉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순회점검 간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하여 충실히 점검하고 있는가? | | | |
|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건의사항, 협의체 논의사항과에 대한 개선조치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위험작업 시작 전 수급인의 작업절차서에 대한 검토·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 | | | |
| 도급인과 공동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급인의 교육을 위해 적합한 장소와 자료 제공·지원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가? | | | |
| 수급인의 산재예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환류하고 있는가? | | | |

4.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2 수급인 체크리스트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 조치사항 |
|---|------|-----|------|
| | 예 | 아니오 | |
| 도급계약 전 적격수급업체 평가 시 도급인에게 필요 정보·내용들을 충실히 제출하였는가? | | | |
| 도급인에게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았는가? | | | |
| 도급인이 운영하는 협의체에 충실히 참여하고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건의하고 있는가? | | | |
| 도급인이 공유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주로서 개선조치를 이행하였는가? | | | |
| 작업 간 타 수급인(업체)와 혼재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급인에게 보고하였는가? | | | |
| 작업 전 TBM 등 회의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가? | | | |
| 작업 전 안전을 위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고 도급인의 검토 및 허가를 거친 후 작업을 실시하는가? | | | |
| 작업 중에도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와 작업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의무 및 작업계획·절차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는가? | | | |
| 도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소속 근로자가 법정 주기에 따라 참여하였는가? | | | |
| 도급인과 별도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일지, 실시현황 등을 작성 및 관리하고 있는가? | | | |